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11
----------	-------

발의연월일 : 2024. 1. 26.

발 의 자 : 백종헌 · 권명호 · 김용판
박덕흠 · 이주환 · 이종성
김희곤 · 정운천 · 강기윤
이만희 · 최춘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기후 · 환경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위해요인 발생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에 기인한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학적 위해에서 오는 부적합도 지속되고, 기후 · 환경 · 생산기술 변화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새로운 위해요인이 대두하는 등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속발전 가능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한편, 인력 · 장비 · 예산 등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농축수산물을 검사할 수 없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 · 검사하는 효율적 ·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함.

또한, 최근 팽이버섯 사태와 같이 수출 시 리스테리아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인한 국가적 수출 차단 및 통관 강화사태 등을 예방하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 시 국제

적 협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됨.

더불어, 우리나라는 수입식품의 비중이 높아 제외국의 식품 환경 변화 및 사건·사고 등 식품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의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임.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데이터 기반 예측 활동인 ‘호라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 보건·환경·식품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잠재적 위해를 파악하는 활동)’을 정책에 반영하고 증거기반 예방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으며, 해외에서는 위해요소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법제정비 및 잠재적 위해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예측·분석 시스템을 운영(FDA의 QPRAM(농축수산물 정량 리스크 평가 모형), GIS-Risk(지리정보 연동 리스크 예측모형) 및 EU ECDC CC-QMRA(정량적 미생물 리스크 평가) 및 EURO HAB(부영양화-유해녹조 경보시스템) 등)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이처럼 생산에서 소비까지 나타나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발생·생장 관련 정보(위해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외국 사례, 근거 규정 및 위해요인별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식품안전 사전예방 정책개발 업무를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생산·판매등부터 소비까지 전(全)단계에서의 국내외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지역·시기·품목별 위해 발생가능성 예측을 실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존 식품안전 정보뿐만 아니라 기후·환경적 정보를 포함하는 위해예측정보 기반의 농축수산물 선택·집중 안전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이 법에서 정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음(안 제2조제8호,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주요내용

식품안전예측 업무를 신설하고 정의하는 한편,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을 설치하여 식품등의 생산·판매등부터 소비까지 발생하는 위해요소에 대응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예방원칙 구현을 위하여 데이터 근거에 기반한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식품안전 예측정보의 분석 및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품안전예측”이란 식품등의 생산·판매등부터 소비까지 전단계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국내외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해 식품안전 위해수준의 변화를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4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식품안전예측 실시) ① 정부는 제4조제2항의 사전예방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식품안전 위해수준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식품안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예측을 실시하기 위해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예측의 방법,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식품안전예측관리원의 설립·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식품안전예측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하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을 두는 경우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품 위해요소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가공·분석·구축
2.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과 식품안전의 영향관계 등 조사·연구
3. 식품안전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위해에 관한 예보 지원
4. 식품안전예측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
5. 식품등의 위해예측·분석 등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식품안전예측 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업

④ 식품안전예측관리원장은 식품안전예측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게 식품안전예측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3. 연구기관

⑤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사람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u>“식품안전예측”이란 생산·판매등부터 소비까지 전단계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국내외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해 식품안전 위해수준의 변화를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u> <u>제23조의2(식품안전예측 실시) ①</u> <u>정부는 제4조제2항의 사전예방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식품안전 위해수준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식품안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u> <u>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 예측을 실시하기 위해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예측의 방법,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u><신설></u>	

<신 설>

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식품안전예측관리원의
설립·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식품안전
예측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 인력
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하 “식품
안전예측관리원”이라 한다)을 둔
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안전예측관
리원을 두는 경우 식품안전예측관
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③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품 위해요소 데이터 및 정보
의 수집·가공·분석·구축
2.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과 식
품안전의 영향관계 등 조사·연
구
3. 식품안전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위해에 관한 예보 지원
4. 식품안전예측에 기반한 식품안
전정책 수립 지원

5. 식품등의 위해예측·분석 등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식품안전예측 정보 수
집·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
약처장이 정하는 사업

④ 식품안전예측관리원장은 식품
안전예측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게 식품안전예측에 필
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3. 연구기관

⑤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은 정부 또
는 정부 외의 사람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